



※ 안 내

○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.

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.

나. 위생점검을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간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